

2024년 대체인력(일반사무) 공개채용 공고문(보훈 제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형태	채용인원	담당업무
일반사무	대체인력 (일반계약직)	1인	- 일반사무 업무 - 사무행정: (문서작성)사업운영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기안문 및 보고자료 작성 (회계처리)사업예산 지출 계획 수립, 회계시스템을 통한 지출 결의, 예산 집행 현황 관리 (회의운영)자문회의, 사업설명회,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등 각종 회의 운영 등

2. 근무조건

근무조건
- 계약기간: 근로계약일로부터 휴직자 복직 및 인수인계기간(2026.9.30.)까지 ※ 계약기간 종료 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근무부서: 사업본부 영화문화팀 - 근무장소: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 보 수: 연 30,000,000원 내외, 기타수당 등 별도 지급 ※ 기타 계약조건은 위원회 인사, 복무, 보수, 계약직직원규정 등 위원회 제규정 및 방침에 따름

3. 응시요건

응시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위원회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요건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인사구비서류를 허위·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자격기준 위반, 변칙채용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9.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남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채용분야별 응시요건에 따라 일부 예외. 또한,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정년 퇴직일까지로 제한함.)

4. 우대사항(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가점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만점기준 3점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만점기준 3점

5. 지원서 접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4. 8. 22.(목) ~ 9. 6.(금) 18:00, 15일간
접수방법	전자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recruit@kofic.or.kr(제목에 <일반사무(보훈 제한) 입사지원> 표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작성 및 제출 (개인인적사항 작성 금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명서 1부 - 어학증명서 1부 ※ 미제출시 해당 사항 인정하지 않음.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후 온라인 제출 (합격자에 한해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필수 제출 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요건 및 우대사항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증빙서류 제출
경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절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및	
여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하여 1부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용이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평가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7. 전형방법(절차) 및 일정

구분	세부내용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입사	
서류전형 (4배수)	내용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 ※ 자기소개서 부적합 기준(작성항목 누락, 동일내용 복사 등 불성실 기재) 해당 시 결격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학교·성별·나이·출신지역·결혼여부 등 명시) 해당 시 결격
	발표	2024.9.20.(금) 전후,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공고 및 개별 통보
증빙서류 제출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기간	2024.9.20.(금) ~ 9.22.(일) 18:00, 3일간
	방법	recruit@kofic.or.kr (제목에 <일반사무(보훈 제한) 증빙서류 제출> 표기)
	제출 서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응시요건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공고문 6번 제출서류 참고)
면접전형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내용	전형위원면접(다대일)
	일시	2024.9.26.(목) 전후
	장소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세부장소 별도 공지 예정)
입사	발표	2024.10.2.(수) 전후,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공고 및 개별 통보
	대상	최종합격자
	일시	2024.10.7.(월)
	장소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세부장소 별도 공지 예정)
비고		입사 전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 실시 안내

※ 서류전형의 경우 대상인원 및 과락기준 점수 미달 등에 따라 4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통해 공고함.(별도 개별 통지 없음.)

8. 전형단계별 과락기준·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과락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평가위원 평균 점수 및 가점 합산 점수 70점 미만 시	전원합격
면접전형	평가위원 평균 점수 및 가점 합산 점수 70점 미만 시	동점자에 대해 재채점

9. 기타사항

- 인사, 보수, 복무 등 기타 사항은 위원회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입사 시 근무예정지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본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입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생년월일(나이), 성별, 학력(학교명, 학점),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채용 전형 제외,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임용 후에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미입사·중도 퇴사 시 또는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시 예비합격자(최종면접 차순위자순)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수의 2배수 이내로 선정, 자격기한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전형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recruit@kofic.or.kr)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채용공고문에서 안내하지 않은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경영본부 인사총무팀(051-720-47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22.

영 화 진 흥 위 원 회